

기안용지
(전화: 731-6347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 30310 - 22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	1991.5.28
시행일자	91.5.		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2과장	협조 기관	사무담당관실사필 협조통제관
기안책임자	송 두 범	문 서 통 제	1991.5.28
경유 수신 참조	수신처 참조	발 신 명 의	시 장
제 목	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	일 안 대 조 필	
(제 1안) 내부결재			
1. 마포구 도정 30310-350(91.3.13)와 도봉구 도정 30310-8921호 (91.3.6) 관련입니다.			
2. 위 호와 관련으로 마포구청장, 도봉구청장이 전달한 아래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,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역면적의 20분의 1미만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나무과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사항으로 별안과 같이 처리			
코자합니다.			
7. 광성중고등학교 변경결정			



- 위치 : 마포구 선추동 91-20 일대	
- 규모 : $A=9,312\text{m}^2 \rightarrow 9,593\text{m}^2$ 중 281m^2	
- 요청사유 : 학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학교측에서 매입한 토지 추가 결정	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	
나. 신창국민학교 변경결정	
- 위치 : 도봉구 창동 468-1 일대	
- 규모 : $A=13,457\text{m}^2 \rightarrow 13,220\text{m}^2$ 중 237m^2	
- 요청사유 : 학교시설로 불필요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토지(사유지)해제 및	
학교소유용지는 추가결정	
(관련 부부교육구청장 요청사항)	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학교시설	
첨부 : 관계서류 1건. 끝	의 안 대 소 필 성
(제 2안)	
수신 : 건설부장관	발신 : 서 장
참조 : 도시계획과장	
제목 : 같음	
1. 우리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첨 고시은과 같이 변경결정	
하였기 보고합니다.	

1991. 3. 27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1부. 끝

(제 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발신 : 서 장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개제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개제 의뢰합니다.

가. 개제 구분 : 고시

나. 개제 건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2조

라. 개제 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: 고시문사본 2부. 끝

(제 4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신 : 서 장

제목 : 같음

1. 마포구 도정 30310-350(91.3.13)와 도봉구 도정 30310-8921호(91.3.26)

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전달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

변경결정 마였기 통보하니, 관계부서에 통보함은 물론 조속 직적승인을 시행하는 등 도시

의안제출

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1991. 11. 10
도시계획과장

수신처 : 마포구청장, 도봉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
(제 5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신 : 서(과)장

제목 : 같음

1. 우력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여부 알려

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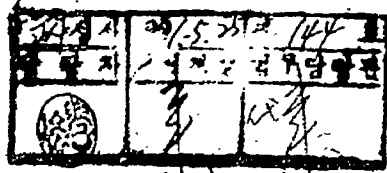
수신처 :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(시설과장), 도시계획과장, 지적과장

원안대로추진

1991. 5. 15
도시계획국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51 호

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

1.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7조제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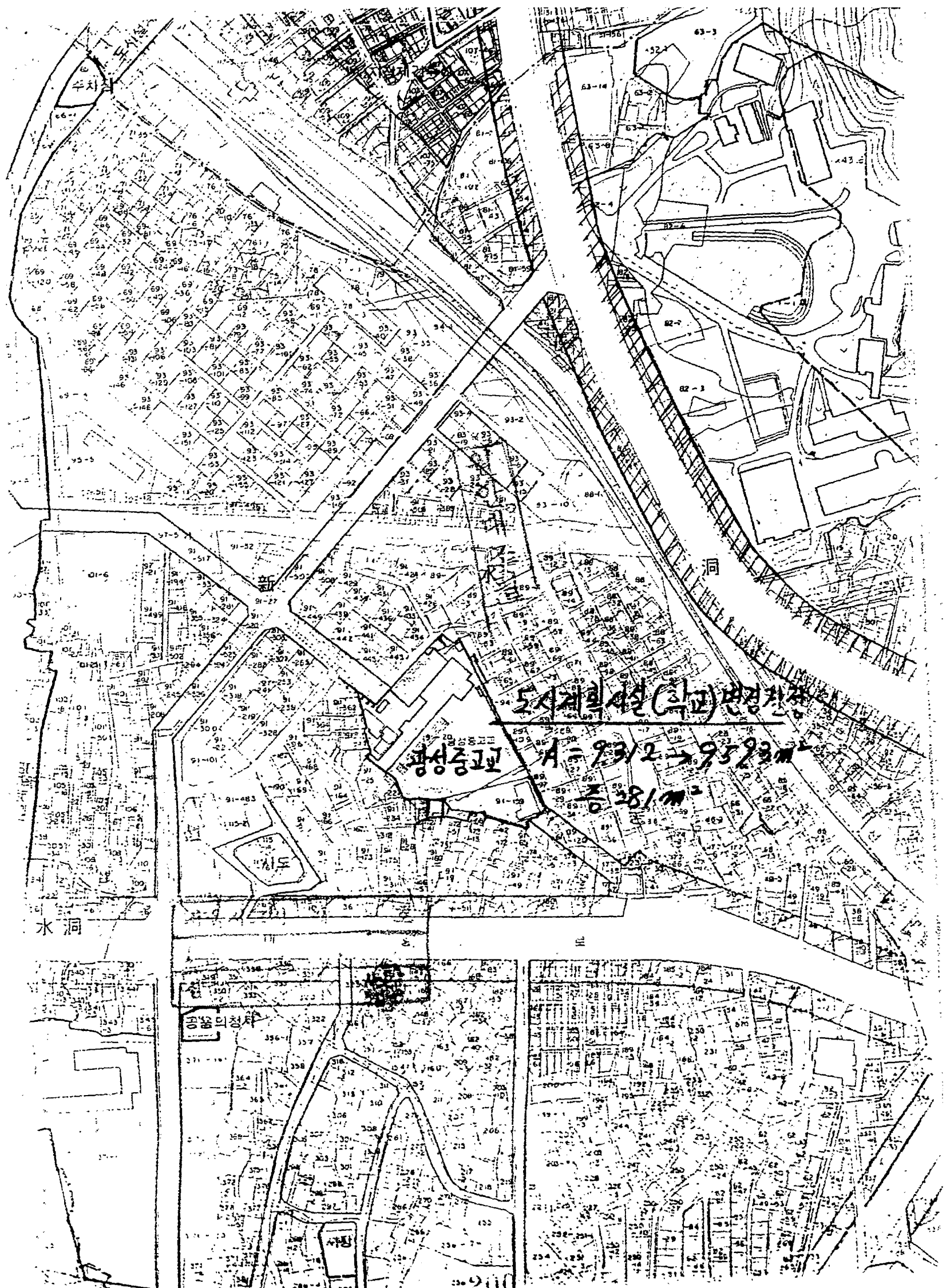
1991. 5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기정	학교	마포구 신수동 91-20 일대	9,312	공성종교 추경결정 증 281㎡
변경	"	"	9,593	
기정	"	도봉구 창동 468 - 1 일대	13,457	신창국교 일부이전 감 237㎡
변경	"	"	13,22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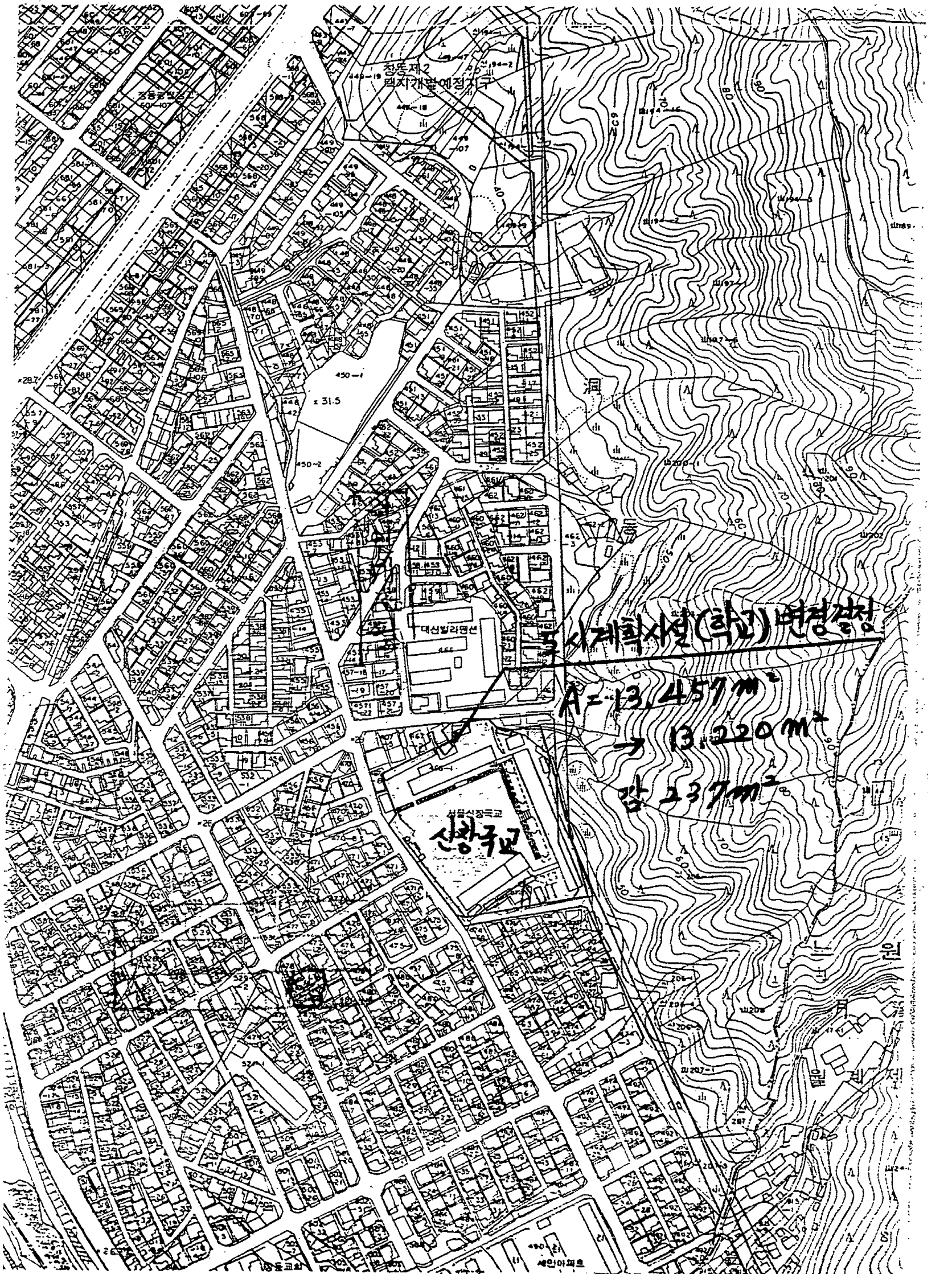
- 나. 도면 :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.



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계획

광성중학교 A = 93/2 -> 95/23

증 28/개



정동제2
면적개별예정지구

도시계획시설(학) 변경결정

A = 13,457 m²

→ 13,220 m²

감 237 m²

신원구묘